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6일,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의원)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맹견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육허가 완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별도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허가 이후 맹견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육 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 시 소유자등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맹견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중)

가.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 관리 등을 위한 법 체계 정비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고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정정하고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6조).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의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② 등록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③ 등록동물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① 기르는 곳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며, ③ 인식표를 부착하고, ④ 배설물을 수거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상자의 구조 및 이송은 소방청 소관으로, 소유자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어 사고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 사실을 통지받고, 해당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재(등록의 정정)하며,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물림사고의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본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도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6조제5항제3호는 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시·도지사’가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령의 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개물림 사고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의 도입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은 의무는 삭제하되, 동 교육을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1조, 제101조).

현행법령은 ①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와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

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여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맹견사육허가 이후에도 책임보험 가입 유지, 정기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부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마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맹견의 월령 및 사육환경 변화에 따른 기질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정기 교육 의무 및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되, 동 교육을 맹견사육허가 갱신 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과도한 부담을 없애고 교육이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이후에도 맹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맹견사육허가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1년

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안(의안번호 제 2216191호)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맹견의 관리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의 부착 의무와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의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101조).

현행법령은 맹견의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①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②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①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②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며, ③ 인식표를 부착하고, ④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여러 건의 인식표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맹견 소유자등의 준수사항으로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의 부착 의무와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의 신고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맹견으로부터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맹견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10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미부착하는 행위’와 ‘동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식표 대여행위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반면에 인식표 미부착 행위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의 인식표 미착용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50만원 이하)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표시한 인식표를 미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